

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 <개정 2025. 10. 1.>

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(제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업규모, 위반행위의 위반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령	위반횟수별 사업정지처분의 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.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2.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2호	지정취소			
3.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3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영업정지 9개월
4.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4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영업정지 9개월	영업정지 12개월
5.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6호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